

2021년도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나급 채용시험 계획공고

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(교육정책개발, 자문 및 관련 업무 추진) 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바랍니다.

2021. 6. 28 .

인천광역시서구인사위원회 위원장



1.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

채용예정 분야	채용직급	채용기간	채용인원	담당업무
교육정책 개발, 자문 및 관련업무 추진	시간선택 임기제 "나"급	임용일부터 1년 (주 35시간)	1명	○ 교육정책에 대한 기획, 자문 및 업무 처리 ○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조사 의견 수렴 및 기타 관련 업무 수행

- ※ 1. 채용기간은 근무실적 평가에 따라 연장 가능(사업 종료시까지)
- 2. 채용근무기간 만료일 이전에도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2조에 따라 임용약정 해지 가능
- 3. 임용포기, 합격취소, 임용결격사유,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,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 면접시험에서 평정 성적의 차하위자 순으로 선발

2. 근거 법령

- 『지방공무원법』 제25조의5(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)
- 『지방공무원임용령』 제3조의 2(임기제공무원의 종류)
- 『지방공무원임용령』 제21조3(임기제 공무원의 임용절차 등)

3. 응시자격 기준

가. 공통사항 (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)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,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65조(부정 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에 해당하지 않고,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)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(면접시험일 기준)

▶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▶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

-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 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 2.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선고를 받은 자
-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, 파면,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,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 1. 공공기관

- 2. 대통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 - 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(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)
 - 4.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(이하 "협회"라 한다)
- ③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「상법」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·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·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.
- ④ 「공직자윤리법」 제17조제2항, 제3항,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

- 거주지 및 성별 제한 없음
- 20세 이상인 자
- 남자의 경우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받은 자
- 관련 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(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항)

나. 채용분야 자격요건 (공고일 현재 기준)

채용예정분야	자격요건
교육정책 개발, 자문 및 관련업무 추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교육분야 정책 개발, 자문 및 관련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.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.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.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 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● 직무경력분야: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및 민간에서 교육 관련 정책개발·지원·자문·참여 경력

※ 실무경력: 관련분야 경력(재직)증명서로 담당업무 및 근무기간 등이 명확히 확인되는
경우에 한하여 인정

4. 선발방법(서류전형 → 면접시험)

가. 1차 시험: 서류전형

- 채용예정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경력(자격기준 요건 등)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채용자격 요건에 적합한 경우 합격

나. 2차 시험: 면접시험

-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, 자질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

다. 기타사항

-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 인원보다 적을 경우 10일간 재공고함.
- 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포함
 - ※ 1차 공고 시기 접수한 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재공고 응시원서 접수자로 같음함.
- 동점자 처리
 -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한 동점자: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 점수
 -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 순위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다시 실시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

5. 시험일정

모집공고	원서접수	서류전형 합격자 발표	면접시험	최종합격자발표
2021. 6. 28.(월) ~ 7. 8.(목)	2021. 7. 6.(화) ~ 7. 8. (목)	2021. 7.19.(월)	2021. 7월 중	2021. 7월말

*채용공고는 서구청 홈페이지(seo.incheon.kr) 채용소식란에 공고

*면접시간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시 공고예정

*상기일정은 응시인원, 시험장 사정, 서류검증 소요시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

6.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

가. 원서교부 : 서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

나. 접수기간 : 2021. 7. 6. ~ 2021. 7. 8.

다. 응시원서 접수처 : 서구청 총무과[인사팀]

라. 접수방법 : 방문접수(인천 서구청 총무과 인사팀) 또는 등기우편 접수

○ 우편 접수 시

- 주소: (22726)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(심곡동)

인천 서구청 총무과 인사팀

- 접수마감일 우편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

- 우체국 통상환증서(응시수수료 상당) 동봉

- 응시표 이메일 송부 예정 ☞ 응시원서 이메일 주소 기재

- 응시표는 면접시험 참석 시 출력하여 지참

- 우편 접수 시 반드시 인사담당자(☎032-560-4104)를 통해 접수 확인을 위한 전화 요망

7. 보수 및 복무조건

가. 보수

○ 연봉: 「지방공무원보수규정」 및 「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지급

구 분	연봉액	비 고
지방시간선택 임기제공무원 '나'급 (6급 상당)	44,710천원	51,098,000원 × 35/40시간 × 1년 × 1명

○ 연봉외 급여(수당): 「지방공무원보수규정」 및 「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지급

나. 복무조건

구 분	지방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 '나'급 (6급 상당)
근무기간	임용약정일부터 1년
소 속	인천광역시 서구 교육혁신과
근무시간	주 35시간
복무기준	「지방공무원복무규정」 및 「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복무 조례」를 준용하되, 근무시간 등 근무조건(토·일·공휴일, 야간근무 등)은 부서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
약정해지	업무태만, 근무수행능력 부족, 임용 결격사유 발생시

※ 채용기간은 근무실적 평가에 따라 연장 가능(사업 종료 시까지)

8.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

가. 응시원서 1부 <서식1>

- ※ 응시수수료 : 7,000원(나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)
- 방문접수: 인천 서구 수입증지 날인(서구청 1층 민원봉사과)
- 등기우편 접수: 우체국 통상환증서 동봉

나. 이력서 1부. <서식2>

- 이력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

다.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. <서식3,서식4>

- ※ A4용지 각 3매 내외, 경력 중심으로 작성

라. 서류전형 제출서류 양식 1부.<서식5>

마. 임용예정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. (해당자에 한함)

- ※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
- ※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만 인정
- ※ 근무기간, 직위,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(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)하고, 민간 근무경력의 경우 사업체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등본,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(국민건강보험공단 「<http://www.nhic.or.kr>」 발급) 등 자료 첨부
- ※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당해분야인지를 판단하게 되며,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됨으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당해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
- ※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,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국민건강보험공단 「<http://www.nhic.or.kr>」), 법인등기부등본 등 확인 가능 자료 추가 제출
- ※ 외국어로 된 서류는 반드시 번역문(공증 필) 첨부

바.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.

- ※ 대학교(전문학사) 이상은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

사. 자격(면허)증 사본 1부.(추후 원본 확인 예정)

- 해당분야 자격증 제출(의사 면허증)
- 기타 직무분야에 필요한 국가기술자격증(전산관련 자격증 등) 제출(해당자에 한함)

아.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<서식6>

자.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1부 <서식7>

차.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.<서식8>

카. 고용보험 임의가입제도 안내 및 가입의사 확인서<서식9>

9. 기타사항

- 응시자는 채용자격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에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제출서류,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(각종 증명서)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 반환이 가능합니다.
-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,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, 채용신체검사 및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.
- 제출서류(이력서, 자기소개서,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)는 게시된 소정의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최종 합격자가 임용포기, 합격 취소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기준에 적합한 사람 중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.
- 상기 시험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 - 채용절차 관련 문의: 총무과 인사팀(☎ 032-560-4104)
 - 담당직무 관련 문의: 교육혁신과 교육혁신팀(☎ 032-560-0871)